2022년 정기총회

○ 일시 : 2022. 2. 26(토) 11:00

○ 방식 : 비대면 ZOOM 회의



정기총회 식순

제1부 기념식

- 1. 국민의례
-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3. 협회장 인사말

제2부 총회

- 1. 2021년 전차 회의록 안내
- 2. 감사보고
 - 김유정 감사
- 3. 의안 심사
 - 제1호 의안
 2021년 감사보고 승인 건
 - 2) 제2호 의안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건
 - 3) 제3호 의안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 4) 제4호 의안2022년 국장단 임명 승인 건
- 4. 안내사항
- 5. 폐회선언

성원보고

2022년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정기총회 성원보고

정 회 원 : 120명

참석회원 : 15명

위임회원: 30명

참석회원과 위임회원 합이 총 45 명으로, 정관 제17조에 의거 정회원의 1/3인 40 명이 초과되어, 2022년 정기총회 성원이 구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2022. 2. 26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장 김동례



김동례 협회장 인사말

2022년 2월 26일

(사)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2021년 정기총회 의사록

○ 회의종류 : 정기총회

○ 회의일시 : 2021. 02. 27(토). 11:00

○ 회의장소 : 온라인 줌회의

○ 회의안건 :

1) 제1호 의안 : 2020년 감사보고 승인 건

2) 제2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건3) 제3호 의안: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4)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회원총수: 100명

○ 출석회원(위임인 포함) : 51명(출석 17, 위임 34)

○ 결석회원 : 49명

() 회의내용

의장 김동례는 재적회원 100명중 참석회원과 위임회원 합하 총51명으로, 정관 제17조에 의거 정회원의 1/3인 34명이 초과되어 2021년 정기총회 성원이 구성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1호 안건: 2020년 감사보고 승인 건

의장 김동례 : 오애숙 감사님의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완: 오애숙 감사님이 접속을 못하고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2.24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받았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회계규정에 의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회비관리 및 사용 여부 적정성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인 의견으로 2020년 감사 결과 협회 운영과 회계사항에 있어 모든 내용이 잘되어 있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례: 다음은 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1호 의안에 2020년 감사보고 승인 건에 대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애숙 감사님의 감사를 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감사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례 : 오애숙 감사님의 감사내용을 승인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님 들어오셨습니다. 처장님께서 감사보고를 해주셨는데 오애숙 감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오애숙: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협회가 열심히 했던 한해가 됐던 것 같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 감사 결과를 보니까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례 : 네 바쁘신 와중에 감사 당일 사무실까지 오셔서 감사를 해주신 오애숙 감사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감사보고 승인 건에 대해 승인 하실 분 아까 손 들으셨죠?

회원일동 : 네

의장 김동례 : 그럼 2020년 감사 결과 보고 승인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호 안건: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건

의장 김동례: 제2호 안건인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건에 대해 상정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완: 네. 2020년 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완은 총회 자료집을 보면서 2020년 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결상내역, 지출결산 내역, 월별 후원금 현황을 출석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통장 잔액을 보여주다.

의장 김동례: 네, 김종완 사무처장님 세세하게 모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서 승인 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견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나 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워일동 :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례: 네.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건에 대해서 동의 및 제청이 들어왔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호 안건: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의장 김동례: 제3호 안건인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해 김종완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완 : 네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에 관해 보고하겠습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고가 아닌 위탁으로 1,000만원 사업비에 관한 사업목적과 개요 교 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총회 자료집을 보면서 2021년 총 예산 4,300만원 중 인건비(770만 원), 운영비(900만원), 사업비(2,020만원) 관련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보고를 마치다.

의장 김동례 : 네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호 안건인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한마디부탁드립니다.

감사 오애숙: 아닙니다.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례: 다른 분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동의와 제청을 받겠습니다.

회원일동 :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의장 김동례: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제3호 안건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에 대해서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호 안건 : 정관 변경 숭인 건

의장 김동례 : 제4호 의안인 정관 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완 :네. 저희 협회가 정관 변경으로 수차례 노력했는데 실제 정관 변경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 변경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마치다

의장 김동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4호 안건 2021년 정관 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회원일동 : 네

의장 김동례 : 자, 그러면 동의와 제청을 받겠습니다.

회원일동 :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례 : 동의와 제청을 하셨으므로 제4호 안건 2021년 정관 변경 승인 건에 대해 승인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완 : 협회 운영지침안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김동례 : 처장님께서 운영지침과 운영위원회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 중에 회비를 내지 않는 운영위원은 기회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혹시 못나온 분들은 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히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소통과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나 임원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애숙 감사님은 다 아시겠죠? 다음은 부회장님으로 오성자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부회장 오성자: 반갑습니다.

의장 김동례: 다음은 지정례 부회장님? 손 흔들어 주세요

부회장 지정례: (손인사)

의장 김동례 : 다음은 김경화 부회장님?

부회장 김경화: (손인사)

의장 김동례 : 조진한 부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조진한 부회장님 계시다는 것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원 취합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조은주 조직국장님 소개합니다.

조직국장 조은주: 네. 반갑습니다.

의장 김동례 : 자, 다음에 교육국에 문예령 국장님. 어디계신가요?

교육국장 문예령: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외협력국장 박미경: 네. 안녕하세요

기자단장 허은정: 안녕하세요. 기자단의 허은정 단장입니다.

의장 김동례: 이번에 노예영 홍보국장님이 열심히 협회 활동과 동구청 학습 메니져 등 여러가지 일을 하시다가 동구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로 이번에 취직을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에들어가면 단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에 홍보국 추천을 받아 기자단에 있던 백소별 부단장이다른 활동 해보고자 나와서 백소별 부단장이 예전에 홍보국 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여러분들이 추천도 해주시고 해서 백소별 홍보국장님으로 일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백소별홍보국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보국장 백소별: 안녕하세요. 이번에 홍보국장을 맡게 된 백소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저에게 홍보국장이라는 직책을 주셔서 어깨가 무겁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협회 홍보 활동

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동례: 이번에 정진희 국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광주대학교 연구원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에 들어오신 박해정 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간사 박해정: 안녕하세요. 박해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례: 송형길 고문님께서 오셨습니다. 광주평생교육사 협회가 있기까지 계속 노력해주 시고 지금도 힘을 주시는 송회장님 계시는데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고문님 얼굴 좀 보여주 세요?

고문 송형길: (ZOOM으로 안보이심)

의장 김동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서로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협회 운영위워들을 추 천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과 협회 회원 가입과 평생교육사 배출에 대해 노력을 부탁하다. 오늘 2021년 정기총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멋지게 더 활성화 있 게 잘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협회회원들과 운영위원들 임원진들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동례는 상기 의안 네 건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의를 종료하다. (종료시간 : 12:10분)

본 정기총회의 의안 내용과 결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적성하고 의장 및 참석이사가 서명 날인함.

2021. 2. 27

사단법인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의 안 번 호	제1호				
의결 연월일	2022. 2. 26				
상 정	정기총회				

의 결 사 항

2021년 회계 감사보고 승인



▶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감사 [2021년도 결산] 보고

감사 보고서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정관 제15조 4항 감사의 직무에 의거 2021년 회계연도의 사업 및 회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 다 음 -

○ 감사일시 : 2022년 2월 15일(화) 오전 11시

○ 감사장소 : 본 협회 사무실

○ 주요감사 내용

- 1. 회계 규정에 의한 수입 및 지출 적정 여부
- 2. 회비 관리 및 사용여부의 적정성
- 감사인 의견

2001年 对外的 多明 对他的 及为

2022년 2월 15일

감사 오상봉

의 안 번 호	제2호				
의결 연월일	2022. 2. 26				
상 정	정기총회				

의 결 사 항

2021년 사업 및 결산보고



▶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 결산총괄표(2021년)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증감 (B-A)	구성비율 (,B/C, %)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증감 (B-A)	구성비율 (B/C)
ो	월	급	5,257	4,558	-699	9.1	인	건	刊	7,784	7,248	-536	14.3
후	회원후육	원금	13,500	13,447	-53	26.6	운	영	刊	9,054	10,258	1,204	20.3
원	사업후육	원금	2,000	3,701	1,701	7.3	사	업	비	20,200	26,484	6,284	52.4
금	기타후유	원금	1,000	150	-850	0.3	\^F	Ħ	HI	20,200	20,404	0,204	32.4
사	업 수	익	20,500	27,250	6,750	53.9	잡	지	출	400	532	132	1.1
예	수	금	1,000	611	-389	1.2	원천	선장수여	수금	1,000	547	-453	1.1
잡	수	익	181	798	617	1.6	0]	월	급	5,000	5,256	256	10.4
							예	刊	刊	0	190	190	0.4
합		계	43,438	50,515 (C)	7,077	100	합		계	43,438	50,515 (C)	7,077	100

□ 수입 결산 내역(2021년)

과목			금액	내용
관	항 목		6 4	ਮਿਲ
합계			50,515,158	
	이월액		4,557,672	
	수입합계		45,957,486	
	<u>ታ</u>	·계	17,297,857	
후원금		회원 후원금	13,447,137	• 회원 후원금(광주CMS) : 9,523,637 • 회원 후원금(한평협 CMS) : 3,923,500
720	후원금	사업 후원금	3,700,720	평생교육인의 날 후원금,기타 협회 사업 진행에 따른 후원금
		기타 후원금	150,000	• 토론회 사례금, 현금성 지원금
	소	- 계	27,250,000	
사업 수익	사업수익 연구 용역수익		24,250,000	• 광주광역시의회 : 14,250,000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 10,000,000
' -	사업수익 보조금사업		3,000,000	• 시청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수익	기타	390,000	• 광주북성중학교 진로체험
예수금	소	≟계	611,600	
91111	예수금	예수금	611,600	• 원천징수금
	소	≟계	798,029	
		예금이자	205,942	• 농협 ~01통장: 5,797 • 농협 ~41통장: 200,145
잡수익	잡수익	기타 잡수익	592,087	• 41번 통장 이월금 : 482,799 • 4대보험 과오납 등 : 98,710 • 명함비 : 10,000

□ 지출 결산 내역(2021년)

	과목		-1.0H	1110				
관	항	목	금액	내용				
합계			50,515,158					
	잔액(이월	금)	5,256,331	•				
인건비	인건비	활동비	7,248,310	• 간사님 활동비 : 7,128,310 • 사업비 일용잡급 : 120,000				
	소	≟ 계	10,257,989					
		임대료	4,800,000	• 사무실 임대료				
		지급수수료	1,433,479	• CMS관리수수료(190,980), 금융결제원(528,000) 빌링원플러스(312,620), 수수료(72,760) 등				
		공공요금	984,640	• kt통신료(627,960), 전기료(316,180), 등록면허세(40,500),				
		도서인쇄비	100,000	• 한평협 도서구입(100,000)				
운영비	운영비	4대보험	143,380	4대보험료				
	चुलुमा	경조사비	480,000	• 행사 화분 및 화환비				
		복리후생비	662,310	• 식대(378,000), 간식류(259,310), 명함(25,000)				
		홈페이지	704,000	• 홈페이지 수정(550,000) 도메인 연장				
		제세공과금	474,300	• 등록면허세, 옥외간판비, 벌과금 등				
		소모품비	475,880	• 사무실 LED 등 교체(218,000), • 복합기수리(110,000), 사무용품 등				
	소	≟ 계	26,484,190					
	외부	보조금 사업비 연구용역 사업비 22,119,690		• 시청 비영리공익활동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 신응원 역당강와 교육(인건비, 교재비 등)				
	내부	평생교육인 의날	814,500	• 바이올린(200,000), 감사패(110,000) • 홍보물(504,500)				
	사업비	내부사업비	350,000	• 강사료 지급(진로체험)				
에스그	<u></u>	≐계	546,970					
예수금	예수금	원천징수	546,970	• 시의회 연구용역 인건비 원천징수액				
	<u>ታ</u>	- 계	721,368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531,930	• 후원금 환급 • 4대보험 과오납				
	잡지출	वी घी घी	189,438	• 예비비				

□ 월별 후원금 현황(2021년)

구분	월 합계	회원후원금 (광주CMS)	회원후원금 (한평협CMS)	사업 후원금	기타 후원금
1월	3,472,477	791,477	931,000	1,750,000	
2월	810,820	710,820			100,000
3월	788,720	788,720			
4월	1,791,390	840,440	950,950		
5월	841,400	841,400			
6월	771,040	771,040			
7월	1,800,780	789,980	1,010,800		
8월	815,840	815,840			
9월	1,111,680	790,960		320,720	
10월	1,932,250	801,500	1,030,750	100,000	
11월	2,235,460	805,460		1,380,000	50,000
12월	926,000	776,000		150,000	
총합계	17,297,857	9,523,637 3,923,500		3,700,720	150,000
O H/11	11,201,001	13,44	7,137	0,100,120	100,000

□ 통장잔액(2021. 12. 31 기준)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	비고
농협	301-0152-7860-01	5,957,894	주거래 입출금 통장
농협	301-0178-6511-41	200,145	보조금 통장
농협	301-0164-4016-71	0	특별회비 통장
광주	1107-020-251869	52	보조금 통장
	합계	6,158,091	

의 안 번 호	제3호				
의결 연월일	2022. 2. 26				
상 정	정기총회				

의 결 사 항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 2022년 수입 안

관	과목 항	목	금액	내용
합계			50,107,129	
	이월금		6,158,091	
	수입합계			
	<u>ታ</u>	- 계	17,500,000	
☆ 이ㄱ		회원 후원금	13,500,000	• 광주협회원CMS + 한평협 CMS
후원금	후원금	사업 후원금	3,000,000	• 평생교육인의 날
		기타 후원금	1,000,000	
	<u>ተ</u>	-계	25,500,000	
사업비	사업비	위탁사업	20,000,000	• 공공기관
, , i e - i		보조금사업	3,000,000	• 비영리 공익활동지원사업(300만원)
		교육사업	2,500,000	• 협회 자체 교육사업
예수금	소	:계	500,000	
-1111	예수금	예수금	500,000	• 인건비 원천징수액
	<u>ታ</u>	:계	449,038	
잡수익	つ ふん	예금이자	5,000	
	잡수익	기타	444,038	

○ 2022년 지출 안

	과목 항 목 합계		7 04	III O			
관			금액	내용			
	합계						
	잔액(이월금)		5,269,129	• 2022년 이월금			
인건비	인건비	급여	7,784,000	• 급여 60만원×12월 = 7,200,000원 • 4대보험료(3월부터 적용) : 584,000원			
	소	≐계	11,454,000				
		임대료	4,800,000	• 사무실 임대료			
		지급수수료	1,500,000	• CMS관리수수료, 금융결제원, 빌링원플러스 송금수수료 등			
		공공요금	1,000,000	• 인터넷, 전기료, 등록세, 전화요금, 옥외간판세 등			
		도서인쇄비	500,000	• 도서구입 및 제본비			
운영비	운영비	활동비 1,500,0		• 임원진 활동비			
	र ० ।	경조사비	500,000	• 화환비 등			
		복리후생비	700,000	• 행사 진행에 따른 식대			
		홈페이지	154,000	• 홈페이지 도메인 연장			
		제세공과금	500,000	• 주민세법인 균등분			
		소모품비	300,000	• 사무실 소모품비			
	소	≐계	24,200,000				
	보조금	보조금 사업비	3,200,000	• 시청 공익활동지원사업 자부담			
사업비	사업비	위탁용역 사업비	18,000,000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진행비			
	일반	평생교육인 의날	2,000,000	• 식대, 화환비, 감사패 등			
	사업비	내부사업비	1,000,000	• 내부 사업에 따른 강사료, 다과비 등			
에스그	<u></u>	∸계	1,000,000				
예수금	예수금	원천징수	1,000,000	•시의회 연구용역 인건비 원천징수액			
エレナ! 大	<u>ታ</u>	·계	400,0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400,000	•			

□ 2022년 사업 계획(안)

○ 사 업 명 :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 사업

○ 사업목적

- 다양한 영역의 평생교육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
- 민간-공공기관 간 협업에 따른 상생 관계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총 7개월(2022. 4-11월)

• 사업예산 : 5,000 천원

• 교육시간 : 평일 주간, 토요일 병행.

• 교육방식 : 대면, 비대면(ZOOM) 모두 고려

• 사업형태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위탁사업

• 교육장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본 협회 교육장

• 교육과정

번호	교육과정	강사	비고
1	○ 평생교육강사 - 협회원 중심 강사 역량강화	광주평생 교육사협회	대면 교육
2	○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한국평생 교육사협회	비대면 교육 (ZOOM)
3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 -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연구회 지정된 지자체	진흥원 내정	대면 교육
4	○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관계자 대상 - 교육 과정 진흥원과 협의 후 결정	진흥원 내정	대면 교육

○ 사 업 명 :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형 일자리 사업

단 체	명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대표 김 동 례)											
사 업	명	١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평생학습형 일자리 사업 (사업유형 : 4번)											
사업7	기간			2022. 4	. 1 ~ 11	. 30		7	장 소 협회 교육장(예정)			정)		
사업대	대상				교육				상지 인원		12	명 내	외	
사업된	목적		• 프리랜서 강사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 대상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 •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진행으로 교육 활동 경험 제공											
		세부사((프로그					주	ક ા	귀 -	8				
		참여2 모집 사전교	및	• 시기 : 4월말 ~ 5월초										
사업니	∄ 용 │	마을공 ⁻ 요구도 프로그 기획 로	기반 4램	•마을공동체 두 군데 섭외 및 요구도 조사 진행 •마을공동체 요구도 기반 프로그램 기획(5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1회)										
		마을공- 현장침		• 마을공동체 요구 유형별 현장 실습 진행 • 성과 공유회 및 피드백 진행										
പ്പ	۸L		нì	2.2	00천원	보조금		2 000 %] 의	자부담	회 11	:	200	천원
예	겐	총사업	1 1 1	3,2	00선된	신청금액		3,000 2	! 12	사구급	기부금 (후원금		2	천원
- 1 - 1	보조금	사 업		70천원 3.4 %)	일 반	330천 (10.3	٠, ١	소모품		천원 (%)			(천원 %)
세 부 내 역 자부담		진행비	(천원	운영비	천	· 원 %)	別		00천원 (6.3 %)	기타			 천원 %)

• 총괄운영기획 : 협회 사무처

• 사업추진부서 : 교육국

• 강사섭회 : 디자인씽킹, 퍼실리데이터 진행 전문가 중심

○ 사 업 명 : 지역산업 맞춤형 IT를 활용한 근거리 창업 교육

○ 사업목적

•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교육

• 협회 사업 다각화를 위한 도전

○ 사업개요

교육대상: 예비 창업자
참가인원: 10-15명 내외
협업기업: ㈜퍼니브라운

• 교육시간 : 총 80시간 중 50시간 협회 진행

• 강 사 료 : 70,000원(시간당)

• 교육강사 : 김중현 외 2

• 교육과정

주차	내용	비고	
1주	창업이란?	강의 / 실습	
2주	기업가정신 및 창업적성	강의 / 실습	
3주	창업 환경분석	강의 / 실습	
4주	씽크와이즈 활용법 & 아이디어 발굴 1	강의 / 실습	
5주	씽크와이즈 활용 & 아이디어 발굴 2	강의 / 실습	
6주	씽크와이즈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표	강의 / 실습	
7주	IT환경의 이해와 4차 산업혁명	강의 / 실습	
8주	IT기반 창업과 홍보/마케팅 전략	강의 / 실습	
9주	창업 사업계획 1	강의 / 실습	
10주	창업 사업계획 2	강의 / 실습	
11주	사업장 운영관리	강의 / 실습	
12주	창업 절차	강의 / 실습	
13주	창업출사표 발표 및 평가	강의 / 실습	

○ 사 업 명 : 서구 행복학습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대 상 : 서구청 내 행복학습 매니저(40-50대) 15명 내외

○ 시 기 : 4/7일부터 매 주 목요일 19:00-21:00

○ 방 법 : 비대면 교육(ZOOM)

○ 강사료 : 200,000원

회차	제목	강사	
4/7	○ 평생교육법과 관련 정책 이해	전하영	
	○ 청정교육업과 산년 경작 의해 │	(한평협)	
4/14	○ 상급자가 원하는 제안서 작성법	김영란	
		(광산구청)	
4/21	○ 갈등관리 평생교육방법 원리와 실제	김동례	
	- 직장 내 갈등 관리, 이렇게 해결합시다.	(협회장)	
	- 현장 갈등조정 및 갈등해결사례	(참외경)	
	○ 직장인 업무 관련 유용한 꿀팁	2 = 42	
4/28	- 사진과 보고서	김종완	
	- 변수 문자, 카톡 활용 등	(사무처장)	
5/12	○ 직장인 노후 준비		
	- 직장인 연말정산, 제대로 활용해서 최대한 돌려받기	김중현	
	- 직장인이 알아야 할 연금저축과 절세	(재무컨설턴트)	
	- 나에게 딱 맞는 보험과 활용법		

의 안 번 호	제4호				
의결 연월일	2022. 2. 26				
상 정	정기총회				

의 결 사 항

2022년 국장단 임명 승인 건



▶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위 촉 장

사단법인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2022년도 각 국별 임원으로 임명함.

- 아 래 -

○ 2022-01호 : 조직국장 **조은주**

○ 2022-02호 : 교육국장 **김소정**

○ 2022-03호 : 대외협력국장 **정선영**

○ 2022-04호 : 홍보국장 **문예령**

○ 2022-05호 : 기자단장 **정은경**

※ 임기 : 2022. 02. 26 ~ 2023. 02. 25

2022. 02. 26.

사단법인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이사장 김 동 례통되었다.

정 관

개정 : 2021. 02. 27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Gwangju Lifelong Educator Association(GLEA)로 한다.

제2조 (소재지) 〈개정 2021.02.27〉

본회의 본부는 <u>광주광역시에 둔다.</u>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부설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개정 2021.02.27>

본회는 <u>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 육성,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회원의 권익신장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평</u>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평생교육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 2. 평생교육보급을 위한 창작연구 및 세미나 개최
- 3. 지역특성 및 사회변화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4. 평생교육 시행에 필요한 회지와 간행물 발간 및 배포
- 5. 평생교육 관련 제반 연구 및 국내외 교류

제5조 (수익사업)

-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 3. 본회의 목적사업에 따라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2.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정회원: 평생교육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
 - 나. 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다. 특별회원 : 평생교육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평생교육 분야와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써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이내 〈개정 2021.02.27〉
-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한다.
- 3. 임원의 보선은 임원의 잔여임기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일 경우에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 3년 〈개정 2021.02.27〉
- 2. 보선에 의하여 선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가.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위 가호 및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라. 위 다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되고 이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회장 및 부회장 은 이상 중에서 피선의 자격을 갖는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한다.
-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주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회원에게 통지(SNS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5. 위 4항 규정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의 사회아래(부회장 유고시 출석이사 중 연장자 순) 의장을 선출하고 진행한다.

제18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1/3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시 회장은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21조 (총회 의사록)

- 1. 본회는 서기를 임명하여 총회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총회 참석 임원은 총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장, 운영위원장, 각 국의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인정한다.

제23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총회에 부의 할 사항
- 9.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10. 회원의 승인, 징계 및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구분 및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SNS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이사회는 제 3호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해당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경우에 회장, 부회장이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하고 진행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3.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이사회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 회의 참석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29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 1.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자격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식과 덕목을 갖춘 사회 저명인사

로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위촉한다.

- 3.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u>3년</u>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2.27〉
- 4.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본 회의 개인 약력을 제출해야 한다.
- 5. 본 회는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운영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위원회)

본 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40명 이내의 봉사정신이 투철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02.27>
- 2.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정회원이면서 협회활동에 적극적인 자로 정하며, 각 부서의 장은 정회원 중에서 소속 운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3. 운영위원의 임기는 매 회계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02.27>
- 4.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본 회의 개인 약력을 제출해야 한다.
- 5. 본 회는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운영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재산의 구분)

-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 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2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의 변경,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수입금)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2.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특별후원금, 기부금
- 3. 사업수익금
- 4. 지원금 및 보조금
- 5. 기타 수익금

제3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세입 및 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u>2개월</u>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감사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부금은 결산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연간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02.27〉

제37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임원의 보수)

본 회의 임원 중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사무국)

- 1.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사무국이사 및 간사)

- 1.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지휘, 총괄한다.
-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 평생교육사,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1조 (지부의 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 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2조 (지부규약)

지부는 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성에 따른 규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지부의 임원)

지부에서 임워을 두고자 할 때에는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법인의 해산)

-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21.02.27>

제45조 (정관개정 및 시행)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시행은 개정된 정관이 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제4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 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보칙 (보칙)

제50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1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대표이사 김동례 (인)

이사 김경화 (인)

이사 김소정 (인)

이사 허은정 (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운영 지침(안)

2019. 02. 25 신설 2020. 02. 17 개정 2021. 02. 01 개정

□ 협회 운영 지침

- 본 협회는 협회원 간에 서로 존중하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 사무처는 매 월 첫번째 운영위원 회의 시 전월의 회비현황, 회원현황, 수입과 지출내역, 통장 잔액을 일정한 서식에 의해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 협회 명의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 각 국은 사업 진행시 <u>외부 기관과 자료를 주고 받을 때</u>, 기획에서 완료까지 전 과정을 **협회 메일**을 활용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개인 메일 or 카카오톡 사용 금지)
- 팜플릿, 책자, 현수막, 홍보 등 협회 사업에 따른 외부 발주는 협회에서 이용하는 주 거 래처를 활용한다. (개인 거래처 활용금지)
- 협회 물품(복사기 등) 사용시 개인 용도의 사용은 자제한다(논문 인쇄 등).
- 협회 대외공문은 공문번호를 준수하며, 결제라인을 거친 후, 발송한다.
- <u>협회 활동에 따른 대외적인 공지</u>(홈페이지, 카페, 밴드, 기타 SNS 등)는 사무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사업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진행하며, 협회원 자격이 있는 자가 진행할 수 있다. 단, 시급한 외부 교육 일정 및 공지사항은 SNS를 활용한 국별 대표자 회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 협회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활용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당사자 를 제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협회 공로상 선정은 협회 발전에 1년 이상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시상처가 같을 경우 3년 경과 후 재수상이 가능하며, 시상처가 다를 경우에는 년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협회로부터 재제를 받은 자는 5년 이내 수상을 금지한다.
- 각 국의 국장은 매 년 총회를 거쳐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재임 중 사임 의사를 밝

히거나, 3개월 이상 활동을 못 하거나 의도적으로 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선임 할 수 있다. 이 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협회 각 국별 사업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며, 총회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수립한 후, 총회 때 발표한다. 단, 미수립 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협회 명의로 진행한 사업 결과물(문서, 사진, 영상 등)의 소유권은 협회에 있으며, 모든 자료는 협회 메일을 통해 즉시 이관해야 한다.
- 협회 운영위원은 협회 내부 사정이나 불건전한 소식을 외부에 전파하지 말아야 하며, 협회 내 단합을 저해하는 이간질, 험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 협회 운영 지침(안)에 게재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협회 사업에 따른 수익금 기부

○ 협회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협회원은 수익 금액의 일부(10%~30%)를 협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 협회 명의의 자격증 발급비용

- 협회 명의로 주관하는 교육의 자격증 발급비는 전액 협회로 귀속한다.
 - 디자인씽킹코칭전문가(등록번호 2019-003010)
- 의부 단체가 소유하는 민간자격증 과정을 협업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자격증 발급비는 외부 단체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기본은 50:50)

2021. 02. 01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회원(2022년)

회 장	김동례									
부회장	오성자, 김경화, 지정례									
감사	오상봉, 김유	고문	공형길							
3 7 4 4	위원장 강준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김철진, 이계윤, 임형택, 신형욱, 조규주								
	대표이사	김동례								
등기이사	이사	 김경화, 김소정, 임성숙, 허은정			정	}				
	○ 사무처장 :									
	○ バナベる・ 位すせ 									
	조직국장	교육국장	대외협	력국장	홍보		기자딘	상		
	조은주	김소정	정신	선영	문호	ll 령	정은?	경		
	○ 운영위원									
	강명임 김경호	ት 김금미 김동	·례 김문경	김문자	· 김민정	김소정	김영임	김영주		
	김유정 김진현									
	오성자 오애석	구 윤혜향 전영	심 정선영	정은경	정진희	조은주	· 지정례	최미영		
	최민경 최철호	흐 허은정								
	○ 광주평생교육사협회원(가나다 순)									
	강명임 공은영	권기영 기연회	회 김경순	김경옥	김경화	김금미	김단유	김동례		
	김문경 김문자	김미현 김민건	정 김복선	김서임	김선아	김선영	김소정	김양섭		
	김연숙 김연옥	김영임 김유?	정 김인숙	김정미	김정화	김정희	김종완	김철중		
0 04 01 01	김현기 김현진	김혜진 김화식	난 남현희	노미숙	노예영	노하선	마하영	문예령		
운영위원	박경은 박모니키				박선화	박옥경	박옥희	박은하		
	박현선 백소별	서민지 선행님			송형길	신수경	신원희	심연순		
	안경아 안은정	양미애 양애역			오애숙	우규자	유광진	윤점숙		
	윤혜향 이다경		원 이영미		이정숙	이현선	이혜경	이혜련		
	전영순 정경민		적 정은경 기 기타기		정화순 키미션	정희경	조규주	조은경		
		조향옥 지정리			죄미영	4 민경	쇠설오	죄영수		
	안시구 안맹사	허은정 홍경류	선 옹세의	왕경독						
	○ 한국평생교육사협회원(가나다 순)									
	강명임 고유선	기연희 김경호	· 김동례	김명희	김문경	김문자	김민정	김봉학		
	김서임 김소정			김종완		노재영				
	박미경 박선화			박현선		백소별				
	안경아 양미애	오애숙 이경회		전영심	정선영	정은경	정진희	조은영		
	조은주 조진한	조현진 지정려	∥ 최민경	최철호	최혜경	허은정				